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3 | 2025.02.17 (2025.02.10~2025.02.1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10~2025.02.1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연기금투자폴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기금투자폴은 20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1조 원을 예탁 중이며, 이번 개편 방안은 ①공공부문의 투자폴 위탁 확대, ②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폴 운용체계 효율화, ③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폴 운용전략 다변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용역계약 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는 등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유독물질의 범주를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때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페로실리코크로뮴·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는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국방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연기금투자플 제도 개편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8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 발표(국무조정실) 9
-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 10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금융위원회)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4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국가유산청)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6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1인) 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4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 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2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25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2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6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중오의원 등 10인)	26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27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7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8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	2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2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3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3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8인)	32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3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3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33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6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ESG] TNFD 산업별 추가 공시 지침(Guidance) 발표
- [에너지·자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 발의
- [방송통신(TMT)]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
- [금융]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 [ESG]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발표
- [중국] 중국의 핵심광물 5개 수출통제 조치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2 (2025년 2월 2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기금투자플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 기금 외 법령상 설치된 기금 및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플 위탁을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 내 투자플 위탁 확대 - 기금의 중장기자산 투자 확대 유도, 투자 대상으로 달러 MMF(단기금융상품) 및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투자플 운용전략 다변화	2025-02-05
---------	---	------------

기획재정부는 「연기금투자플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음. 연기금투자플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01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1조원을 예탁 중임

이번 개편 방안은 ①공공부문의 투자플 위탁 확대, ②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플 운용체계 효율화, ③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플 운용전략 다변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① 공공부문 내 투자플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플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 또한, 현재 투자플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플 위탁을 허용한다

② 투자플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함.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임

아울러,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70점)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하여 낮은 투자플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함

한편,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22년 도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함

③ 투자플 운영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함.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함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하여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함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플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플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임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 발표

- (ICT) AI CCTV 개발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
- (혁신금융)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
- (산업융합) 첨단바이오횐약품 임상시험이 치료로 연계되는 경로 마련
- (산업융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수입 원료세포 사용
- (순환경제)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의 재활용

2025-02-13

국무조정실은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음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인 반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임.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를 선정했음.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는 다음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임

(ICT 샌드박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됨

(혁신금융 샌드박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되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됨

(산업융합 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됨

(산업융합 샌드박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됨

(순환경제 샌드박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매립되고 있음.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 '25년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6개 유형 신규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문답서 배포

2025-02-1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이하 '문답서')를 발표했음

*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됨(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음.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힘.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음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행위(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금융위원회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Pilot Test)

2025-02-13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음.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힘

< 추진배경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왔음.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힘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 장치
상반기	매도 거래	법집행기관	-
		지정기부금단체 · 대학교 학교법인	수령 및 현금화 기준 · 절차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이해상충방지
하반기	매매 거래	상장회사 ·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자금세탁방지 보완 등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함

먼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임.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함.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임.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됨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함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하였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14 시행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정비 (제13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②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등 (제20조의2 및 별표 3 제2호사목 신설)

- 재화·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용역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재화·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용역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③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 (제27조의2 및 별표 3 제2호차목 신설)

-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7일’ 이상 동안 그 선택·결정의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등의 금지행위를 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2-14 시행
---------	---	---------------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사이버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2-12 시행 예정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 동응답 처리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14 시행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범위와 평가 결과의 통보 기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 (제2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

-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요건으로서 수용인원의 산정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하되,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보도록 함

②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제5조)

-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립·시행하도록 함

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2 신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⑥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및 대리자 지정 등 (제13조의3 신설)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

2025-02-14 시행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영향협의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영향진단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12. ~2025.03.05.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3. ~2025.03.24.
-----------	--------------------	-----------------------------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수요조사,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사업화 촉진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전화: 044-202-4533, 팩스: 044-202-6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4. ~2025.03.26.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출입국 관련 특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특구 내 준주거,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044-202-4747) (전화: 044-202-4747, 팩스: 044-202-602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0.
~2025.03.24.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에 대한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인력란을 해소하고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전기관련 비전공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시공 경험을 갖춘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등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양성교육훈련을 거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인정교육 방법 및 이수기준을 마련함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tel:044-203-3895)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0.
~2025.03.25.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 ②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 (안 제4조)
- ③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 ④ 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 ⑤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 (안 제20조의3)
- ⑥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 문의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mailto:환경부_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12.
~2025.03.2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mailto:고용노동부_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3.
~2025.03.26.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mailto:국토교통부_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8, 팩스: 044-201-557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4.
~2025.03.28.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며,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안 제7조의2)
- ②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 (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 ③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 (안 제79조의2)
- ④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 (안 제86조)
- ⑤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 (안 별표 1)
- ⑥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 (안 별표 6)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http://www.mw.go.kr) (전화: 044-201-3515, 팩스: 044-201-554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2025-02-13 발의
---------	---	---------------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2025-02-10 발의
-------	---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안 제165조의6제5항·제6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5-02-10 발의
-------	---	---------------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 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5조제4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2025-02-12 발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 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 (안 제133조제4항, 제141조제3항 신설)**
- ②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안 제165조의4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
- ③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 (안 제165조의6제5항,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5-02-14 발의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02-10 발의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 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2025-02-10 발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을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2025-02-10 발의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

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둬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2025-02-10 발의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별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025-02-11 발의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5-02-11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 (안 제25조의6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2025-02-10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 및 정비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 신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3항)
-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밝히도록 함 (안 제23조)
- ④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24조)
- ⑤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5조제2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연구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35조의5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2025-02-12 발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폐기·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2025-02-10 발의

한우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사육환경에 적응된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이며, 국내에서 토종 유전자원 특성에 기반을 두고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가축임. 한우는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한우산업은 식품 이상의 지역 공동체의 다원적 특화 기능을 하고 있어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등 10인)

2025-02-12 발의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025-02-12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2025-02-10 발의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 결과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8조제4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2025-02-11 발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8호·제12조제2항제2호·제15조·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2025-02-11 발의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점을 고려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 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아울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신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전형적으로 공장(工場)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됐으며 이러한 성격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마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8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조제7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8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아예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면접 후 결정’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기업이 지불할 노동의 가격을 완전히 숨기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채용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

특히 상당수의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므로 구직자의 ‘채용광고 응시(청약)’에 대하여 구인자의 ‘채용결정(승낙)’으로 성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구인자가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구직자는 계약의 주된 부분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응시(청약)하게 되는 일방적 정보비대칭이 발생함

이와 같이 채용계약의 핵심내용인 근로조건을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직자가 을(乙)의 입장임을 악용해 면접시간 등 기회비용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자, 구직자의 시간을 비용으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반한 행위임

이에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2025-02-11 발의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함 (안 제30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2025-02-14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2-14 발의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2025-02-10 발의

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여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에서 증가된 공사비와 관련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현행법에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조정 가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법리와 실제 판례가 존재함.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계약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경 또는 계약유지에 중대한 불균형 상황인 물가변동 급등시에는 시장변경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사에서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이유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도급계약체결 후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5-02-11 발의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로 정의되며, 현행법에는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규정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장비 및 작업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하고,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제 때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휴대하거나 작업장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의미하며, 특히, 중대재해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붕괴, 충돌, 낙하, 전도, 붕괴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거나 개발 중에 있음

현재 스마트 안전기술은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점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된 수단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건설인력의 빠른 감소와 전반적인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 안전기술의 사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안 제62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5-02-12 발의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로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민간이 발주하는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는 많으나, 건축주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공정한 대가 미지급 관행으로 건축사가 업무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에 대한 상호 동등한 입장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13조제1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6인)

2025-02-12 발의

현행 「유류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2/17(월) 15:30	- 고유법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2/18(화) 10:00 2/19(수) 10:00 2/20(목) 16:00	- 업무보고(금융), 법안 상정 등 - 업무보고(비금융), 법안 상정 등 - 법안 의결 등
	법안심사1소위	2/20(목)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 2소위	2/20(목) 14:00	- 법안 심사
기재위	전체회의	2/18(화) 10:00	- 법안 의결, 현안 질의(기재부, 한은)
문체위	전체회의	2/19(수) 15:00	- 법안 상정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2/17(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19(수) 10:00	- 법안 상정
복지위	전체회의	2/18(화) 10:00	-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보고
	법안심사1소위	2/19(수)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2/20(목) 10:00	- 법안 심사
환노위	환경법안소위	2/18(화) 10:00	- 법안 심사
	고용노동법안소위	2/19(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20(목) 10:00	- 법안 의결, 현안보고
국토위	전체회의	2/18(화) 14:00	- 법안 상정, 현안 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17(월) 14: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김태선·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2/17(월) 17:00	글로벌 AI 정책의 흐름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조정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8(화) 09:3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이훈기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18(화) 14:00	전통주산업 발전 및 명주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 색 토론회	윤호중·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0(목) 07:30	[한중의원연맹 2025 제1회 정책간담회] 중국 AI 산업굴기와 제조혁신 변화	김태년·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0(목) 13:30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맹성규·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1(금) 14:00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 정 방안	이재강·박지혜 의원실 등	의정부시청 본관 대강당
자료집 등	2/17(월)	「Data+」 2025-2호(통권 제2호) 발간	국회도서관	
	2/19(수)	「금주의 서평」 제716호(2025-7호) 발간		
	2/20(목)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호(통권 제264호) 발간		
	2/20(목)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 제1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21(금)	2025년 「예산춘추」 첫 번째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2/10(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3호(2025-3호)	국회도서관	
	2/12(수)	「금주의 서평」 제715호(2025-6호)		
	2/11(화)	「NABO Focus」 제90호	국회예산정책처	
	2/12(수)	「이슈와 논점」 제2323호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10.~2025.02.1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10(월)	ESG	TNFD 산업별 추가 공시 지침(Guidance) 발표
2/10(월)	에너지·자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 발의
2/11(화)	방송통신(TMT)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
2/12(수)	금융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2/12(수)	ESG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발표
2/12(수)	중국	중국의 핵심광물 5개 수출통제 조치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13(목)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
2/14(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2 (2025년 2월 2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